

제12장 입소·퇴소·생활규정

제135조 (입소대상자)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1등급~요양5등급으로 인정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이거나 동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입소가 허락된 수급자이다.

<개정 2008.9.19., 2018.2.13>

제136조 (입소의 제한) 원장은 다른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의 입소를 제한하여야 한다.

- ① 전염성 질환자
- ② 기타 다른 노인에게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제136조의 1 (입소정원) 본 시설의 입소정원은 80명이다.

[본조신설 2009.7.6]<개정 2013.7.25>

제136조의 2 (입소자의 모집) [본조신설 2009.7.6]

- ① 본 시설의 입소자의 수가 입소정원에 충족이 될 때까지 수시로 선착순 모집한다.
- ② 입소정원이 충족이 된 후에 입소신청자는 입소대기자로 하여 관리하고 퇴소 등으로 인하여 정원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 대기자 순서에 의해 정원에 맞게 입소처리 한다.
- ③ 모집방법은 시설홈페이지와 공단홈페이지에 시설을 소개하여 모집하거나 시설관계인의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본항신설 2013.2.21><개정 2018.2.13>

제136조의 3 (입소계약) [본조신설 2009.7.6]

- ① 입소자는 입소계약을 함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 입소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입소계약은 본 시설, 입소자, 입소자보호자를 당사자로 하여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③ 입소계약은 본 시설을 이용하는데 당사자 간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시설의 이용과 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36조의 4 (입소계약기간) 입소계약기간은 입소자의 요양등급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6]

제137조 (입소비용) 시설의 입소에 필요한 비용 중 입소보증금은 받지 않으며 월이용료는 공단부담금과 보조금, 이용자부담금으로 구분된다. 이용자부담금은 다시 수가자부담금과 비급여자부담금으로 구분된다.[본조신설 2009.7.6]<개정 2008.9.19, 2009.7.6, 2011.9.9, 2013.2.21>

- ① 삭제 <2008.9.19>
- ② 삭제 <2008.9.19>
- ③ 수가에 대한 자부담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40조에 의한 금액으로 “별표18”과 같다.<개정 2015.12.22., 2017.3.23., 2018.2.13>
- ④ 비급여 항목은 식재료비, 간식비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 등에서 정함에 의하며 본 시설의 비급여 항목과 비급여에 대한 자부담금은 “별표18”과 같다. 비급여 자부담금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비용부담자에게 고지한다. <개정 2018.2.13>

⑤ 입소비용의 변경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수가의 변동
2. 수급자의 요양등급 변동
3. 수급자의 자격변동
4. 비급여항목의 인상 또는 인하의 요인 발생으로 인한 비급여비용의 변동.

⑥ 본조 5항 4호의 경우 수급자측과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3.2.21>

⑦ 본조 5항 및 6항에 의하여 입소비용을 변경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측에게 변경된 급여를 청구하기 최소 1주일 전까지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3.2.21>

제138조 (입소비용 납부 및 감면)

① 본 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는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월에 대한 입소비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익월 중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소비용의 감면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준하며 만약 감면의 상황이 발생하면 원장의 승인에 의하여 실행한다. <개정 2008.9.19., 2013.7.25., 2015.2.16.>

[전면개정 2018.2.13.]

제139조 (입소비용의 수납) 본 시설의 입소비용은 납부 당일에 세입결의 하여 즉시 수납보관하고 그 다음날까지 본 시설의 운영비 통장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제139조의 1 (서비스의 제공) 본 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조신설 2009.7.6]<개정 2011.9.9, 2013.2.21>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제공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수행한다.

1.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입소자를 차별 또는 학대하지 않고 존엄한 존재로 대한다.
2. 자기결정 :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의 서비스 이용에 입소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한다.
6.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한다.
7. 사회통합 : 입소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입소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8.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입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9. 부당청구 금지 : 입소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② 시설에서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서비스 : 활력증후체크, 약물관리, 혈당관리, 배변관리, 욕창 및 피부질환관리, 구강관리, 건강상담, 건강검진, 외래진료관리 등을 통한 건강관리
 2. 물리치료서비스 : 통증치료, 운동치료 등을 통한 입소자의 신체적인 기능유지 및 회복
 3. 영양관리서비스 : 질병과 저작·삼킴 능력에 따른 개별적·위생적인 영양식(1일 3식) 및 간식(1일 2회) 제공
 4.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몸단장, 배변, 식사, 이동, 세면, 목욕, 환경정리, 체위변경, 세탁 등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5. 재활프로그램서비스 : 시장보기 등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생신잔치·어버이날행사 등의 가족지원프로그램, 지역사회행사참여를 통한 지역사회통합프로그램, 미술요법·음악요법·원예요법·회상요법·웃음치료 등 기능회복프로그램, 나들이를 통한 정서지원프로그램의 제공.
- ③ 본조 2항에서 제공 되어지는 일반적인 서비스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2011.9.9>
- ④ 본조 2항에서 제공되어지는 일반적인 서비스 외에 수급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의하여 발생되어지는 서비스비용에 대하여서는 수급자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본항신설 2013.2.21>
1. 유치도뇨관 · 비위관튜브 등의 제거위험과 욕창, 낙상 등의 수급자의 생명유지에 해가 되는 사항에 대한 방지를 위하여 신체일부의 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보호자의 승인하에 신체구속을 통한 특별한 보호를 실시한다.
 2. 가래의 생성으로 기도가 막힐 염려가 있거나 호흡이 불안정한 수급자에 대하여 석션 및 산소호흡기를 통한 산소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한 보호를 실시한다. <개정 2018.2.13>
 3. 죽음을 앞둔 수급자에 대하여 편안한 환경을 위한 특별실과 호스피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특별한 보호를 실시한다.
 4. 특별한 보호를 통하여 발생이 되는 비용은 본 운영규정의 비용의 발생에 대한 다른 조항에 정함이 없는 한 특별히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특별실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이 되는 본원의 손실이 있을 경우, 수급자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결정하도록 한다.

제139조의 2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전면개정 2013.2.21]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수급자측에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측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이 선량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39조의 3 (신원인수인의 자격) [본조신설 2009.7.6]

- ① 입소자가 의사나 행위무능력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신체적인 장애 등)일 경우 입소자의 입소에 관한 계약의 대리인이 되며 입소자의 법률적인 행위나 행위결정권의 대리결정권자이다. 그리고 입소자의 가족 및 기타 친인척을 대표한다.
- ② 입소자의 시설과의 계약에 따른 모든 계약사항에 대하여 입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다.
- ③ 입소자의 신원 및 시설 내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인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이다.

제139조의 4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본조신설 2009.7.6]

- ①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입소자는 시설과 시설기물을 소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신원인수인은 주소 등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경우와 입소자의 의료급여 자격변경신청 및 자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즉시 시설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안 함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입소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④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설의 사고예방안전지침 및 지시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특히 입소자의 사생활침해용이나 인권침해용이 아닌 입소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소자에 대한 직원의 인권침해, 학대를 예방하는 목적으로써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하며 시설 측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 ⑤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은 계약상의 자부담비용을 시설이 지정한 날에 납부해야 한다.

제139조의 5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본조신설 2009.7.6]

- ① 입소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입소자는 다른 입소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고충상담을 통하여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④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입소자는 시설에 대한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한 시설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39조의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7.6]<개정 2013.2.21>

- ① 응급상황이나 촉탁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등의 진료 및 관찰에 의하여 수급자가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수급자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적인 치료여부 및 방법을 결정을 한다. <개정 2018.2.13>
- ② <본항삭제 2013.2.21>
- ③ 시설은 입소자의 응급상황 발생 즉시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동시에 수급자측에 상황을 설명한 후 119구급대를 통하여 협약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하고, 만약 협약의료기관이 응급상황대처능력이 없거나 너무 먼 거리에 있을 시, 응급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를 하도록 한다. 단,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서는 선조치 후 수급자측에 후 보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 ④ 입소자의 입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원인수인은 간병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간병인의 선정에 따른 경비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과실로 인한 입원은 시설이 책임을 진다.

- ⑤ 입소자의 의료적인 치료로 병원 및 약국에서 발생이 되는 비용은 입소자 측이 부담한다. 다만 본 규정 제139조의 2에서 정한 시설의 배상책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⑥ 시설에서 제공되는 외래진료서비스는 협약의료기관을 포함한 남원시 관할지역에 국한한다. 이외의 지역에 대한 외래 진료서비스는 수급자측에서 부담한다. <본항신설 2013.2.21>

제139조의 7 (면회)

- ① 입소자에 대한 면회는 항상 가능하나 전염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면회를 제한 할 수도 있다. <개정 2018.2.13>
- ② 면회시간은 원칙적으로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시설 측의 승인 하에 면회시간 외의 시간에도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 ③ 면회자의 시설 내에서의 숙박은 부득이한 경우 면회당일에 한정하여 숙박을 허용할 수 있다.
- ④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면회 시 반입되는 음식물은 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입소자에 대한 음식물의 제공은 시설 측에 위탁하여야 한다. 반입되는 음식물에 대한 사고는 면회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⑤ 면회장소는 면회실과 생활실 어느 곳이든지 면회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단, 시설장은 감염 등으로 인하여 수급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실에서 면회를 통제할 수도 있다. <개정 2015.2.16.>

[본조신설 2009.7.6]

제139조의 8 (입소자의 외출 및 외박) [본조신설 2009.7.6]

- 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1시간 이상의 외출 또는 외박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담당직원에게 통보하고 외출신청서 작성하여 승인을 얻은 후 외출·외박하여야 한다.
- ③ 입소자의 외출 및 외박에 대한 출발시간은 9시 이후이고 귀원시간은 18시 이전이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시간을 엄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에 통보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입소자가 외출 및 외박 신청시간(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 지체 없이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입소자가 외출 및 외박시간을 초과하고도 통보치 않을 경우는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는 사후 통보할 수 있다.
- ⑥ 시설 직원이 동행하는 입소자의 외출 및 외박은 직원의 외근업무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 ⑦ 시설장은 입소자의 건강과 안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출과 외박을 불허할 수 있다.
- ⑧ 외출·외박 중 입소자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상황이 발생되면 입소자측은 즉시 시설에 알려야 한다. <본항신설 2013.2.21>

제139조의 9 (무단외출 및 행방불명) [본조신설 2009.7.6]

- ① 시설은 가출(무단외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입소자가 가출 하였을 경우, 시설은 필요한 신병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 시설은 가출 경위서 등을 작성해야 하고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출자를 찾도록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 ④ 가출자가 발생하면 시설은 4시간 이내에 보호자에게 경위와 상황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⑤ 시설은 가출자 발생 후, 신병확보에 대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시설은 가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담당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상황에 따라 그 책임을 묻는다.
- ⑦ 단독외출을 하는 입소자가 단독외출 시 또는 시설에 신청을 안 하고 외출하는 무단외출에 대한 책임을 입소자측의 책임으로 한다.(단독외출하는 입소자라 함은 시설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외출을 하는 입소자로서 입소 당시 입소자측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서상에 단독외출요구가 명시된 입소자를 의미함) <개정 2018.2.13>
- ⑧ 단독외출 입소자의 무단 외출 및 이탈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입소자에 대해 시설장은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제139조의 10 (입소자 재산의 관리) [본조신설 2009.7.6]

- ① 입소자는 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안 소장할 개인 재산에 대하여 시설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신고된 개인재산 중 시설 측에 관리를 위탁한 재산에 대하여는 시설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③ 시설에 신고하지 않거나 위탁관리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서는 시설 측에 관리의 책임이 없다.

제139조의 11 (사망) [본조신설 2009.7.6]

- ① 사망자 처리에 대하여 시설장은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은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장례절차는 입소자와 신원인수인 뜻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무연고자인 경우는 시설에서 결정하며, 입소자의 유지를 우선으로 한다.
- ④ 신원인수인 및 기타 시설에 신고 된 친인척에게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되어도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시설의 장례절차에 따라 행하여지고 이에 대하여 입소자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례비용은 신원인수인 또는 그 외 친인척이 부담한다.
- ⑤ 입소자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신원인수인에게 인계하고 신원인수인이 없을 경우 그 외의 상속인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8.2.13>
- ⑥ 본조 5항에 의한 유류금품의 인계가 안 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에 대해서는 그 입소자의 유증에 의하여 먼저 처리하고 유증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 시설의 부담으로 지불된 장례비용이 있을 경우 장례비용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다음 처리한다. <개정 2015.2.16., 2018.2.13>

[본조신설 2009.7.6]

제139조의 12 (계약의 해지 및 퇴소) [본조신설 2009.7.6]

- ① 시설과 입소자와 입소계약이 해지 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자부담비용이 3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시설장은

납부 연기를 승낙할 수 있다.

2. 입소자의 시설에 대한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통보할 경우.
 3. 입소자의 사망으로 인한 자연적 계약해제의 경우.
 4. 입소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계약의 해제의 경우.
 5. 입소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시설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1개월이 초과되는 장기적인 병원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7. 입소계약상의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경우.
 8. 입소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9. 입소자가 시설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시설 내의 생활이 상당한 사유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고, 타 입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어 집단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계약의 해지사유와 입소자의 퇴소사유는 동일하고 또한 퇴소일을 해지일로 본다

제139조의 13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입소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6]<개정2013.2.21>

1. 시설내의 모든 시설물은 소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파손 또는 멸실할 경우 입소자측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원상회복이 어려울 경우 잔존가치에 따른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3.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시설물에 대하여 입소자는 너무 독점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사생활보호방침에 의하여 지급되어지는 개인적인 시설물에 대하여서는 입소자 본인 것 외에 사용을 할 수 없다.
5. 물리치료장비, 의료장비 등 사용상에 주의를 요하는 시설물품에 대해서는 직원의 작동 하에 이용할 수 있다.
6.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주방, 세탁실, 약제실은 출입을 금한다.